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

- ▶ 일시: 2013년 12월 16일(월) 오후 3시~5시
- ▶ 장소: 한국교총회관 2층 외솔홀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2013년 12월 16일(월) 15:00 || 한국교총회관 2층 외솔홀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모시는 글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수자 대책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 관련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를 모시고 연구결과로써 제안된 대책들의 활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재연

행사일정

일시	내용	
15:00~15:10	• 환영사	• 이재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5:10~15:50	• 사회	• 조아미(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제1발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 발표: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제2발제: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 발표: 강지명(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15:50~16:00	• 휴식시간	
16:00~17:00	• 종합토론	• 고의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 류기옥(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장) • 김선옥(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대표) • 박현동(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의정부시이동청소년쉼터 소장)

목 차

제1발제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1
 -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발제

-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33
 - 강지명(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 교수)

조윤오(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교수)

강지명(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연구원)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¹⁾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2개년에 걸쳐 기획된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1차년도인 2012년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을 수립하였고, 2차년도인 2013년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1차년도에 성폭력에 관해 연구한 결과, 가정폭력 및 성매매와의 중첩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피해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은 성매매 피해의 경계 선상에서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성매매 대책은 이러한 성폭력 피해대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이유진, 강지명, 윤옥경, 조운오, 2012 : 274).

인터넷의 발달과 아동·청소년의 모바일 기기 사용 증가로 아동·청소년들이 점점 더 용이하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가출청소년에게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성매매 유입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군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고 재유입되는지를 파악해 그 과정에 대한 개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정혜원, 박윤희, 2012 : 4).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제집단, 방탕함 등으로 부정적,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어 노출된 위험도에 비하여 보호대책 마련 및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1) 이 글은 본원의 2013년 고유과제인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의 일부로써 최종보고서에서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경험한 경우에는 그 연령대에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로 간주해야 한다. 그렇지만 성매매에 관한 피해자 관점의 선행연구는 주로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가 많았는데, 성매매를 성인지적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연령인지적인 측면은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성인여성 성매매와는 구별되는 연령 및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가출과 성매매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정책은 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이 분리되어 있고 인프라 역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책과 인프라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사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는 사후적인 조치일 뿐 사전예방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 동안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특히 2010년부터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유인행위를 처벌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찰청의 안전드림사이트를 통한 신고프로그램도 운영해 왔으므로 이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그들의 욕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와의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성매수자의 재범방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연구추진체계

연구수행 단계별 추진 체계 및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1단계 실행계획	자료수집 분석	1-2월	○ 선행연구 자료수집 및 분석
	정책협의회 개최	2월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모색
	실행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2월	○ 실행계획 수립 ○ 실행계획서 제출
	문헌연구	3-4월	○ 이론적 배경 ○ 정책현황 ○ 외국사례
	예비조사 실시	4-5월	○ 현장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실시
	조사계획 수립	6월	○ 조사계획 수립



2단계 중간보고 및 조사연구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6월	○ 중간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서 제출
	조사도구 개발	4-6월	○ 조사도구 개발 ○ 연구진 회의(수시)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6-7월	○ 성매매 관련 시설 종사자 의견조사 실시
	면접조사 실시	7월	○ 피해 아동·청소년 심층면담조사 실시



3단계 최종보고 및 인쇄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8-10월	○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 성매매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분석
	최종보고서 제출	10월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예방대책 수립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 최종보고서 제출
	정책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12월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모색
	최종보고서 인쇄	12월	○ 보완 및 최종보고서 인쇄

【그림 1】 연구수행 단계별 추진 체계 및 내용

II.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일반대책

(1) 성매매 원인별 유입방지전략 차별화

성매매 청소년의 다양화에 따라 그들의 성매매 유입방지를 위한 전략도 차별화 되어야 한다. 저연령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경험, 학교폭력으로서의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장활동가와 전문가들은 최근에 와서 가출·성매매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들의 경험을 요약하면 가출인의 연령이 낮아지고 따라서 성매매 참여 아동·청소년의 연령도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에 머무르고 학교에 다니며 용돈이 필요하거나 성형비 마련 등의 이유가 발생할 때 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 그리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친구나 선배의 강요로 강제적인 성매매를 하는 경우 등 성매매에 유입되는 동기와 과정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고 한다. 성매매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말은 그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동기와 과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과 재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점차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성매매에 대한 생각도 일반인들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²⁾ 무조건 성적인 욕구와 표현을 억누르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성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경험은 가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들의 이러한 피해경험은 자존감 감소, 여러 가지 정신장애, 사회성 부족,

2) 정혜원(2011b:72)의 연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에게 ‘성관계,’ ‘성폭행,’ ‘성매매’의 간극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 않고 경계를 넘나든다.”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성폭력을 하나의 애정관계의 발현으로 받아들이는 인지왜곡까지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여 성매매의 세계에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일 성매매 참여가 학교폭력의 한 방편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성폭력이며 범죄이다. 또래나 선배 등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폭력 단속과 처벌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가정폭력 방지교육 등 부모교육 실시

부모교육과 가정폭력 방지교육 등 적극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 특히 부모의 역할과 양육태도에 기인하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와 폭력 때문에 집밖생활을 하고 있고, 이들을 집으로 귀가시키는 것은 이들에게 부모로부터 학대와 폭력을 견디라는 말과도 같다.

부모의 폭력(성폭력)은 성별에 관계없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의 강도는 성별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그 영향력은 여아와 여자청소년들에게 더 크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타인과의 관계맺음에 대한 열망과 기대는 여성들의 존재의미와 자존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여아와 여자청소년의 이후 태도, 의식,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면이 잘 부각되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거나 가족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가출청소년에 비해 자존감이 훨씬 낮으며 이들은 거리에서의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애정의 또다른 형태로 이해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 이들 피해청소년들은 애정결핍, 행동장애, 인격장애 등 정신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가출과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부모에 대한 개입전략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한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이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예비부부들,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성교육 및 성평등교육 확대

보다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성교육과 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조사에 참여한 많은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기존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규모 강당교육, 생물학적 지식에 치우친 성교육 등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성매매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초등학생들에게 피임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성개방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성관계의 첫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성경험의 저연령화 현상에 맞는 성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성경험의 저연령화는 성매매에 대한 관용도를 상승시키고 이러한 관용도의 상승은 성매매를 장기간 지속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여기에 왜 현실적인 성교육의 도입이 필요한 지에 대한 근본이유가 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대 성매수자의 비율이 3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성매매는 수요의 측면에서의 근절대책이 공급측면의 근절대책보다 더 필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성매매가 발생한 이후에 존스쿨 교육 등을 통해 성매수자들의 생각을 교정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에 대한 관용도는 이미 훨씬 이전에 형성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후관리책 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의미의 교육이 장기적으로는 성매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성매수 방지교육 등을 학교와 직장 뿐 아니라 군인, 공익요원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연관되어서 한가지 더 추가할 것은 성매매에 대한 관념과 허용도는 그 사람의 양성평등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 다른 성을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다른 성에 대한 대상화와 물상화가 그 근본원인이라 할 때, 성매수 방지교육은 양성평등 교육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4) 스마트폰 성매매 대책 수립

스마트폰을 통한 성매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성매매의 개별화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자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성매매 지형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예전에는 성매매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pc방을 거점으로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조건만남과 애인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성매매가 성사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대체해가는 과정이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무차별적으로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조장하고 매수자와 매매자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성매매를 위한 채팅앱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성매매의 증가는 성매매의 개별화를 초래하게 된다.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조건만남을 성사시키기 때문에 예전처럼 pc방에서의 감시 등을 통한 예방은 힘들어지고 있다. 더불어서 성매매의 개별화는 거리에서 물리적으로 마주치는 가출·성매매 청소년의 수를 줄어든게 만들고 있고 이에 따라 거리 중심의 아웃리치도 그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 거리중심의 아웃리치가 너무 소모적이라는 지적³⁾을 아웃리치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실무가도 인정하였음을 볼 때 성매매가 물리적 공간을 떠나 사이버 상으로 이동함에 따라 가출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도 사이버 아웃리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가 2011년부터 하고 있는 사이버포대상담실⁴⁾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5)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착취, 또는 폭력이라는 강력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당연히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엄격하지 않았다. 어떤 행동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처벌요구는 그 행위 자체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특정행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아동성폭력이 최근에 와서 새로이 나타나기 시작한 사건이 아니지만 우리사회의 공분과 강력처벌에 대한 요구는 최근에 더 강력해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매매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인식은 그리 부정적이거나 공분의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학교나 경찰에서 성매매는 몇몇 ‘질 나쁜’ 청소년들의 개인적 선택이고 개인적 비행이라는

3) 한 현장활동가는 현재 아웃리치 활동이 지나치게 형식과 절차에 얽매어 있으며 보여주식 형식적 홍보활동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활동가들은 아웃리치 활동이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상 아웃리치가 필요한 야간에는 거리상담과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였다.

4) 사이버포래 상담실은 성매매경험이 있는 언니가 청소년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상담을 하고 쉼터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이버아웃리치의 한 유형이다.

생각이 강하다. 성매매아동·청소년은 자신들이 성인매수자로부터 폭행이나 성폭력을 당해도 경찰에 가서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호소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경찰들이 성매매 소녀들을 대할 때 피해자로서 보기 보다는 성매매라는 나쁜 짓을 한 범죄자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단 경찰이나 교사들의 생각이 이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도 아직까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성매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것에 성폭력 뿐 아니라 성매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인식전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6) 학교내 상담사 및 복지사 역할 활성화

학교현장에서 전문상담사나 학교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 성매매가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친구나 선배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성매매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초기에 찾아내고 이들에게 심리적,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학교현장에서 담당할 전문인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7) 가출팸 감독 및 관리 강화

가출팸들이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고 유사가족과 같은 애정과 유대관계를 통해 서로 의지하는 가출팸의 등장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가출청소년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래포주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조직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출팸에서는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청소년과 이들을 관리하고 벌어들인 돈을 갈취하는 청소년으로 나뉘어 착취고리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알려지기로는 보증금없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성매매 조직처럼 움직이는 가출팸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위해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단계별 예방대책

(1) 성매매 이전의 1차 예방: 초기 가출 예방 및 왜곡된 성인식 개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대책은 아동·청소년의 가출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여자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가출 이후의 생계유지형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매매가 발생하기 이전에 고위험 아동·청소년의 가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범죄 및 비행을 다루는 1차 예방활동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보통 아동·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성매매 이전의 1차 예방활동 역시 아동·청소년의 가출을 방지하고, 가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아동·청소년에게 미리 명확히 알리는 계몽활동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앞서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캐나다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경계 프로그램”(Videotron’s Vigilance on the Net program)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가출 이후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아동·청소년에게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이 쉽게 만나게 되는 또래포주 및 성인 남성들이 실제 어떤 마음을 갖고 거주공간과 용돈 등을 아동·청소년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지 사례를 들어 아동·청소년에게 교육하고 있으므로 성매매 1차 예방으로써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⁵⁾

이와 함께 1차 예방활동으로써 일반 성인 남성 및 청소년 또래 집단에 대한 건전한 성인식 및 성역할 교육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캐나다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초기 성매매 유입을 막기 위해 캐나다 아동보호 센터(Canadian Center for Child Protection)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인들의 왜곡된 성 인식 변화 캠페인과 미디어에 의한 과장된 성 산업 변화 활동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26)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이 가족해체나 빈곤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학교 부적응 문제를 겪게 되면서 부모나 학교의 정상적인 관심과 훈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행교우들과의 접촉을 계기로 쉽게 가출을 결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무단결석이나 학교 부적응, 가족갈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위험 아동·청소년을

5) <http://www.vigilancesurlenet.com/en/home/index.phpv> 최종확인 2013년 8월 5일.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에게 1차 예방 차원의 상담과 지도를 실시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일반 아동·청소년이 갈등상황에서 막연히 가출을 문제해결의 답으로 여길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학교 교육을 통해 가출 이후의 상황이나 온라인 내에서 성매매 접근 사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SERA Model” 내 Level 1에 해당하는 활동도 결국 성매매 유입을 막기 위한 1차 예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일시적 가출이나 무단결석 등의 행동을 보이고,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선물이나 돈을 받는 행위가 포착된다면 가출과 성매매를 막기 위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상담 및 지도활동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고위험 단계에 이르기 전부터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가출이나 무단결석 등을 막기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매매 이전/이후의 2차 예방 강화: 초기 성매매 선별·평가 작업 강화

이번에는 2차 예방적 시각에서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자 아동·청소년의 가출 이전(또는 이후)의 성매매를 막기 위해 미국의 보건사회복지부(2008)가 사용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 아동 선별도구를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2차 예방이란 어느 정도 성매매 위험성이 인지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과학적인 사전 스크리닝 도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성매매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선별해 낼 수 있다면, 제한된 범죄예방 자원을 고위험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어느 날 갑자기 아동·청소년이 누군가로부터 합당한 이유 없이 고가의 선물이나 돈을 받기 시작하거나, 외모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태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조기에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성매매 및 가출 위험 청소년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20%가 최초 성매매를 또래 포주의 폭력과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소 학교폭력 피해 여부나 갈등적 교우관계 등을 상세히 살펴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이전에 파악해 낼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성착취 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으로 가출 아동·청소년과 거주부정자 노숙 아동·청소년을 지목하기도 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10). 가출한 이후 친구 집에 돌아다니며 생활하거나, 가출패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일시적으로 국가 청소년 보호시설 내에 있다가 다시 사회로 이탈해 나간 아동·청소년 역시 성매매에 취약한 대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보통 이들은 정상적인 아동·청소년과 비교하여 안정적 거주공간이 없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통상적인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매매 유혹에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성매매 중단 후에도 다시 성매매 행위에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가출 이외에도 정신지체 및 약물·알코올 중독을 성매매 고위험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아동·청소년이 가출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약물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 있다면, 성매매 취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캐나다에서 신체, 정신 장애 아동·청소년과 약물·알코올 의존 청소년, 그리고 일부 캐나다 원주민은 스스로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피해 발생 후에도 성착취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보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착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취약 아동·청소년으로 다루어진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 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 아동·청소년 계층을 사전에 선별해 낼 수 있는 관련 도구를 개발해 내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성매매 이후의 3차 예방: 성매매 재유입 억제방안 강화

성매매 유입이 일어난 이후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을 막기 위한 3차 예방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차와 2차 예방이 아직 성매매를 저지르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3차 예방은 이미 성매매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재유입 방지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핵심적으로 성매매 여자 아동·청소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심리적·신체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즉,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 및 애착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여자 아동·청소년은 또래 포주들이 보이는 트라우마 유대감을 자신이 갖고 있는 유일한 애착관계로 착각하여

다시 포주와의 억압적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심층면접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성병이나 임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성매매의 굴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성매매 또래포주와의 관계를 끊지 못해 다시 성매매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재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성매매 여자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서비스 전달 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방법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출 이후의 성매매가 일자리를 합법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어지는 생계형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여자 아동·청소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주거지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그리고 스스로 가출과 성매매를 단절시켜주는 정서적 지원 및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가출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을 보다 신속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11년부터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북극성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과 재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가출 청소년의 “신변 안전”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매매의 굴레에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빠져 나오기 위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관련 사실을 철저한 익명성으로 보장해주면서, 우선적으로 다른 성매수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3차 예방 차원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피해자 쉼터 운영방식이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일반 비행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다소 강압적인 규칙이나 훈육을 강조하는데 반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일종의 “천국의 문”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성매매 아동·청소년 쉼터 운영방식에서 강력한 훈육이나 통제는 결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경험했던 성인 남성이나 또래 포주와의 강압적인 관계를 연상시키지 않기 위함이다. 즉, 철저한 피해자-중심적 시각(victim-centered approach)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 비행청년 쉼터와 달리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쉼터 시설은 피해 생존자의 자유와 편안함이 강조되는 중간 휴양소 개념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단절된 학습기회를 되돌려주며, 장래 직장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비 경력 준비

단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 우리나라 성매매 쉼터 시설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성매매 재유입이 보다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1)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

(1)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조사대상이 된 현장전문가 중 약 67.3%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경험과 성매매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의 경험에 의하면 가정폭력·성폭력 경험을 가지고 가정을 “탈출”하여 거리생활을 하는 피해청소년들(탈출형성매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소중함을 상실하여 ‘이미 버린 몸,’또는 ‘더러운 몸’으로 인식하는 등 자존감이 매우 낮으며 장래를 포기하고 성매매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또한 성폭력, 성관계, 성매매에 대한 구별을 못하는 등 성에대한 민감성이 둔화되어 제 2, 제 3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청소년들은 가족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 성매매 유입과 재유입의 악순환에 내몰리게 되기도 한다. 애정결핍, 행동장애, 인격장애 등 정신과적 장애로 고통받으며 사회성이 떨어지는 특징도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피해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등 개별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성매매 아동·청소년 중 가정폭력·성폭력과 연관성을 가지지 않은 집단들도 있다.

먼저 집에 머물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소위 ‘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은 용돈이나 생활비 또는 성형수술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선택하는 부류이다. 이들은 가족의 지지나 학업복귀, 취업 등을 통해 성매매 생활을 그만둘 수도 있는 집단이다.

좀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집단은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강요된” 성매매를 하는 피해청소년 집단이다. 학생사회에서의 권력관계의 위계에 따라 권력을 가진 선배나 동료친구가 힘없는 학생들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활용하는 유형으로 그 범죄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 성매매를 하면서도 번 돈은 자신이 가지지 못하고 상납해야 하고,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폭력과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무기력과 절망에 휩싸이게 된다. 이같은 학교폭력으로서의 성매매를 밝히려면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학교상담사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성매매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쉼터와 상담소 위주의 피해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장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피해지원 업무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피해자 연계, 의료지원, 숙식제공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피해자 조기발견 지원체계 운영이나 피해자 학업서비스와 직업교육, 경제적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피해자 조기발견 지원체계의 미비의 이유는 이처럼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성매매 피해청소년 집단을 단일집단으로 상정하고 동질적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는 공통사항 중심의 지원보다 차별화되고 개별적인 욕구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피해자 지원이 발전되어야 한다.

(2)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인문교육 활성화

장기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교육과 인문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가출아동·청소년들은 장기간의 학교중단과 이로 인한 학력부족으로 인해 지금 당장 적절한 취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진로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성매매나 노래방 도우미로 버는 금액에 익숙해지면 다른 직종의 일들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게 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입이 좋은 직종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과 노동의 중요성, 일을 통한 자기성취의 중요성,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가치 등을 일깨우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숙자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교육이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에게도 행해질 필요가 있다. 내가 왜/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 지, 내가 왜/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과 사색이 이들에게 일로서의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가출소년들을 위한 인턴쉽을 운영하는 새날쉼터의 사례나 그룹홈 살림의 공동작업장 연계활동은 좋은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자활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미요이나 네일아트, 제빵에 집중되어 있는 직업훈련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성매매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도 제고

성매매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적 규정의 명확화와 실무관행상 변화가 요구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이들을 온전히 피해자로서 간주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에서도 이러한 불명확한 입장은 확인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를 위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법률에서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에 차이가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보호를 위한 법률 제2조는 “피해청소년”과 “대상청소년”을 구별하고 있다. 먼저 제2조 6항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은 아동대상성범죄(강간, 강간상해치사, 강간상해치상)와 음란물, 청소년 매매 강요행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이라고 되어 있고, 제2조7항에서, “대상청소년”은 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간단히 말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청소년이 아니라 대상청소년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한 기저에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볼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보여진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표면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자발적인 ” 선택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성매매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강제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에서 보호해야 하는 성에서 성매매는 제외했다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성매매 이해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매매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묵시적으로 “자발성”에 대한 전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인된 자는 피해자이지만 자기 스스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법률에서조차 성매매아동청소년을 본질적으로 피해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해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동의에 상관없이, 자발성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법률상의 불명확성 뿐 아니라 청소년시설이나 경찰의 인식도 매우 중요한데, 경찰의 경우 조건만남의 피의자로 성매매청소년을 조사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원스톱 센터 이용시에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률상, 실무관행상 여전히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폭력의 피해자, 착취의 피해자가 아니라 돈을 쉽게 버는 수단으로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기 쉽다. 따라서 성매매피해를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4) 범죄피해자로서의 가출청소년 보호방안 마련

거리청소년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도 예방해야 하지만 이들이 잠재적으로 범죄피해자 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출동기가 어떻든간에 집을 나와서 거리에서 생활을 하는 노숙청소년, 거리청소년이 되다보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절도를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사실은 어느정도 인식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이들이 동료거리청소년들이나 성인들로부터 갈취나 폭행, 성매매 강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가출하여 거리에서 사는 아동·청소년들은 정글같은 거리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피해를 당하기 전에 내가 남에게 피해를 먼저 주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생활이 피해를 키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출팸을 만들고 조직화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범죄의 가해와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호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가출아동·청소년, 성매매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들을 범죄피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해줄 수 있는 기관-경찰, 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들이 지역사회의 치안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사례별 조사분석과 지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교육현황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형사사법기관 인지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비율이 늘어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형사사법이 인지하는 성매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문제의 파악이다. 현 아동·청소년 성매매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파악에 더욱더 경주해야 한다. 하지만 2010년 청소년대상 성매매 최초경로가 인터넷 채팅의 경우가 78.4%에 달했다는 데이터는 성매수자와 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의 실태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기기의 보급,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아동·청소년의 금전욕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일회성 책상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매매피해청소년의 성매매원인, 동기 등에 대한 실질적 분석을 데이터화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해마다 존재하는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원인을 사례별로 다각 조사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각의 성매매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케이스워크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체로 캠프를 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개개아동·청소년에 대한 원인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실태 파악을 통해서 꾸준히 관찰해서 성매매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주된 대응책인 위탁교육은 청소년성장 캠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청소년의 경우 서울의 평화의 샘 한 곳에서만 지원 가능한 실정이다. 성매매피해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위탁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

(1) 가출청소년 이용업소와의 협력활동 강화

가출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업소와의 연계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활동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출아동·청소년들은 이제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모이기 보다는 개인대 개인의 만남으로 개별화된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pc방이나 찜질방은 가출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의 지역 업소와의 협력을 통해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이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쉼터나 시설, 상담지원이나 의료지원 등 필요한 욕구에 맞는 지원을 연계해 줄 수 있도록 쉼터홍보 게시물 부착을 협조받거나 또는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상담으로 이끌 수 있는 연계활동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출청소년쉼터의 다양화

거리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쉼터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가출아동·청소년의 일부는 집이나 쉼터 어디에도 머물고 싶어하지 않고 그냥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조건만남이 성사되면 모텔 등에서 하룻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생활한다. pc방이나 찜질방, 노래방에 열사이후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정책은 청소년들의 귀가나 쉼터입소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숙식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밀어 넣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귀가나 쉼터입소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각종 위험과 피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의 책임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미혜(2012: 74)는 야간시간 청소년들이 아무 조건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일시쉼터의 기능과 유사하지만 귀가나 쉼터입소를 목표로 하지 않고 기본적 욕구를 해결해 주고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최순중(2011: 262)은 “기존 쉼터가 원활한 귀가조치를 목적으로 보호나 양육, 자립지원만의 기능을 강조하다보니 노숙 및 배회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역할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가해 및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묻지마쉼터”를 제안하였다.

다른 한편 가출아동·청소년의 욕구와 피해정도, 성매매기간 등이 모두 다양하므로 특화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학업, 취업, 약물, 임신 등 개별적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며, 이렇게 되면 모든 시설에서 모든 욕구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쉼터 다양화 논의에서 추가할 점은 여러 전문가들이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일반가출청소년이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청소년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부족하므로 일반 청소년 쉼터나 그룹홈 등에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경우에 일반청소년들이 성매매 경로 및 방법을 공유하게 되어 일반청소년도 성매매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또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성매매청소년과 일반가출청소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3)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통합과 지역단위의 원활한 소통과 연계가 필요하다. 조사에 응답해준 현장활동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 지원정책 담당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권익증진과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반해, 성보호과에서는 청소년성매매 관련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종합지원센터나 위기지원센터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설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위기청소년과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이원화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은 이원화되어 있지 않은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지역단위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성매매 피해와 그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계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통합과 법의 일원화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역단위에서 사례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연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4) 아동·청소년보호정책으로서의 정체성강화

집성촌의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시설입소와 직업교육’이라는 성매매피해자지원 및 보호정책의 기본틀은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대안교육 위탁 운영의 수요의 증가는 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개별 분석·지원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에 대한 정책이 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 특화되어 사례별로 수립되지 않은 이유를 청소년의 성매매피해자의 수가 성인에 비해서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존재해야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 수가 실질적인 성매매의 수를 가늠할 수 있는지,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아동·청소년보호정책에 입각한 대표적 대응책인 대상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하는 제도는 별도의 통계조차 잡히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였을 때 ‘성매매’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보호처우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아동·청소년 성매매 업무 체계 일원화

아동·청소년성매매 업무는 타워기관이 필요하다. 성매매를 한 대상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구매한 아동·청소년 모두 다양한 부처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 정책부서가 전담할 수는 없다. 대상아동·청소년이라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며 아동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대상아동·청소년이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서 아동·청소년성매매관련 업무는 성매매예방 및 대책의 주제 범주에서 다루기보다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적 자원을 관장하는 타워기관에서 개입의 정도와 단계를 조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6) 인터넷 성매매파악을 위한 전담형사사범수사팀의 구축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의 비율을 감안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의 첫단추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사법기관의 인지가 불가능에 가까운 암수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합정수사 등의 형사정책적 범죄예방요소도입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파악된 성매매아동·청소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몫이지만 성매매수자에 대한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몫일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성매매를 파악하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2012년에 여가부 중앙점검단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의 업무해태가 아니라 일선 형사사법기관으로 그 역할이 이양되고 일선의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업무가 경찰의 주된 업무내용이 아니며 특히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될 수 없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이버수사대를 보유한 경찰조직에 인터넷 성매매파악을 전문적으로 하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전담하는 사이버수사팀을 구축하여 상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한 건이라도 발생된다면 아동·청소년성매매전담 사이버수사팀은 존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7) 아동·청소년 성매매 통계자료 구축

청소년성매수 유인과 같이 최근에 법제화된 정책은 우선 순위로 통계데이터의 정리 및 구축을 통해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성매매대상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사건처리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기타의 범죄와는 통계분류가 되어야한다. 현재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 미성년자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미성년자만 통계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통해서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소년의 인원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여성가족부 대안교육위탁생의 수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을 따름이다.

(8) 체계적인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대책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서비스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성매매에 이르게 된 유입 경로가 결코 아동·청소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출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나, 또래 포주들에 의한 폭력과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여자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임신, 성병 등의 건강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자 가출청소년보다 여자 가출청소년이 가출 이후 오토바이 배달이나 주유소 근무,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경제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가출하여 성매매를 접하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업수행 능력 향상, 안정적 주거지 제공, 가족관계 회복, 질병치료 개입, 정신건강 관리 등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미국 일리노이즈 주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체크리스트”를 보면, 초기 인테이크에서 지켜야 할 익명성 보장 약속과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욕구평가가 얼마나 광범위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신변안전 보장 및 의식주 관련 생필품 제공,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관리, 부모 및 보호자 지원, 의료 및 구강검사 등 복잡한 아동·청소년의 욕구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다루는 관계 기관 담당자들 역시 피해 아동·청소년의 욕구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그들의 성매매 재유입을 막기 위한 진정어린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작은 매춘부”로 봐서는 안 되고, 아동·청소년이 포주나 남성들과 맺고 있는 트라우마적 유대감을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매매 원인행위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에서 의무적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다루는 모든 관계 기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사전 이해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흥미로운 것은 현장의 실무자들이 10대 초반의 어린 아동 성매매자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면서, 10대 후반의 여자청소년들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 당국이 명확히 공무원들이 경계해야 할 잘못된 태도라고 천명했다는 점이다.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성매수자의 책임이 더 크고 피해아동은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나 10대 후반의 여자청소년은 어느 정도 남성에게 고의적으로 청소년이 접근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실무자들의 태도라고 명확히 규정해 놓은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자들이 다시 한 번 귀기울여야 할 점이다.

관계 공무원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경로와 피해자의 행동패턴, 그리고 복잡한 개별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피해자 중심적 시각”의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은 실현될 수 없다. 그리고 성매매 여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 효율적인 정책은 마련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다루는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한 범죄피해 생존자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바라 봐야만, 중국적으로 아동·청소년 스스로도 자신에게 일어난 성매매 상황을 일종의 범죄피해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고, 사후에 성매매가 발생했을 때 숨김없이 다른 성인이나 외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본 연구의 질문지에 응답한 현장활동가 대부분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을 꼽았다. 무려 70%정도의 응답자가 이 부분이 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부분은 성매수자의 처벌을 더 엄격히 하고 교육시간을 늘이는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제도는 그 중요도와 효과면에서 큰 점수를 받지 못했다.

1)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령별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사범은 20대~30대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40대의 인원도 적지 않았다. 현재 각 기관을 통해서 성매매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나 실직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성매매예방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다. 대표적인 성구매자인 남성에 대한 집합교육이 가장 효율적인 기관은 국방부이다. 따라서

성구매 주요 연령이 밀집될 수 있는 '현역군, 예비군, 민방위'에 대한 성매매예방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대가 밀집되어 있는 현역사병에 대한 성매매예방교육을 강화하고 30~40대 예비군훈련시 성매매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민방위에서도 성매매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매매예방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20세 미만에게는 성교육을, 20세~40세까지는 지속적인 성매매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으면 40세 이상이 되어서 군이 성매매예방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성매매에 대한 시각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성매매예방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군기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이수를 각각 년1회이상 하고 있다. 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를 2013년말까지 개발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동시교육이 가능하도록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어⁶⁾ 일회적이고 요식적인 교육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매 휴가, 외출 및 전역 시 성매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교육 또는 내용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매 휴가 및 외출, 전역시 관련내용이 든 유인물을 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군의 특성상 도서오지에는 전문강사가 투입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고려한 전문강사의 투입책을 마련해야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 용역을 통해서 군의 실정에 맞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교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강사의 투입과 군특성을 고려한 교안의 마련을 통해서 성매매예방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최근 지침을 통해서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을 전상상으로 통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상 기록을 마련한다고 한다. 교육이나 훈련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미이수자를 발굴하여 교육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일선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한 방침으로 인사상 가점을 적립해주기도 하였으나 인사고과에 반영되거나 수당에 반영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었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의 미이수시 패널티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6) 국방부 정보공개청구(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접수번호 2166698)

2) 성매수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처벌강화

(1)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 성구매자의 신고 유인책의 마련

모든 정책이 엄벌 일변도로 갈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성구매시 극형인 사형을 부과한다고 해서 아동·청소년성매매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는 국가가 개입해야할 중요한 범죄행위이지만 범죄행위를 포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에만 기대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를 근절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당사자에 대한 정책,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종사자에 대한 정책이 우선 되어야한다. 물론 일반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인지시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개입 및 발굴이 시급하다.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을 찾아서 건전한 성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성매매유인·권유과정, 성매매의 과정에서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강력 처벌함과 동시에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가중처벌하지만 신고할 시에는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당근책이 될 수 있다. 또한 형벌을 피해갈 수 있는 형사정책적 보안처분의 마련도 하나의 방법이다. 17세~19세의 청소년과의 성매매에 있어서는 청소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쉽지 않아서 가중처벌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구매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매매 뿐만아니라 비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신고에 대한 당근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의 처벌강화

성매매 강요뿐만 아니라 포주, 보도방을 통한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을 접할 시 신고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이 비자발적임을 인지시 가중처벌한다. 비자발적 성매매의 범주에는 성매매금품을 나누어가지는 공범, 성매매의 과정을 원활히 하는 조력인의 존재가 포함된다.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인터넷이 주요 공급루트이다. 1:1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자발적 성매매로 간주한다. 자발적 성매매과정 위탁이라고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도와주는 사람의 존재는 존재자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로 간주되어야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도와주는 사람의 존재를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성구매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3) 특정사회봉사명령의 부과(인터넷 성매매 예방 글 유포 알리미봉사)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에게 성매매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매매예방 글을 보내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아동·청소년성매매를 비롯하여 성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채팅사이트나 여러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성매매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글을 남기게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성매매예방에 일조하게 한다. 이는 성구매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사이트에 접근하는, 성매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매매조건만남을 원하는' 사람에게 감시의 눈초리가 존재함을 알릴 수 있다. 2008월에서 2013년 8월까지 성매매사범이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0세 이하의 성매매 사범의 인력을 '인터넷 성매매 예방 글 유포 알리미'로 봉사하게 한다면 연간 2만명이상의 인터넷 활동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성매매 초범은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존스쿨을 수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가처분으로 특정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4)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 성매매 아동·청소년 대다수가 남성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이후 남성이 다시 자신을 협박하거나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렵다고 말한 아동·청소년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제대로 알려져야 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남자 성매수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과의 성매매로 인해 공식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인식하게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단절과 신고, 외부 도움 요청 등의 행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 연방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팔레르모 의정서에 입각하여 아동·청소년 성 약취자 기소(Prosecution)를 하나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응한 경우에도 무조건 남성 성매수자를 기소하여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위 그루밍 법을 기초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발생 이전에 적극적으로 국가가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매수자 단속 및 처벌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사전 단속 및 유인행위 처벌에 국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고, 사후 처벌 양형 수준 역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밖에 성 매수자 관련 대책을 제안하면, 첫째, 성관계 동의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현행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아동·청소년과의 어떠한 성적 접촉도 성폭력/성착취로 간주하고 처벌해야 한다. 둘째, 미온적인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나 처벌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 피해자의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성매매 대상청소년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수사태도와 관행은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성매매로 유인하거나 조장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고자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네티즌 모두가 성매매 방지와 성 매수자 탐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경찰청에서는 안전드림사이트를 마련하여 인터넷신고체계구축에 힘쓰고 있으나 가출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활동가들 조차도 이 사이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홍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국사례에서 본 것처럼 유도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성매수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예방정책이 필요하다.

4. 정책방안 추진계획(안)

앞의 절에서 제안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뿐 아니라 성매매정책, 교육정책, 형사정책 등 관련 정책들간의 긴밀한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정책 과제의 시급성이나 정책 추진의 용이성, 조정 및 추가 검토의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다음 표와 같이 정책추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정책방안 추진계획(안)

정책방안		추진시기(안)			관계부처	관련법
		단기 (2014)	중장기			
			2015 ~ 2017	2018 ~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	(1) 성매매 원인별 유입방지전략 차별화		○		여성가족부 교육부	가정폭력법 성폭력법 성매매법 아청법 학교폭력법
	(2) 가정폭력 방지교육 등 부모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 교육부	학교폭력법
	(3) 성교육 및 성평등교육 확대	○			여성가족부 교육부	아청법
	(4) 스마트폰 성매매 대책 수립		○		여성가족부	아청법
	(5)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	○			여성가족부	-
	(6) 학교내 상담사 및 복지사 역할 활성화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7) 가출팜 감독 및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 경찰청	청복법
	(8) 성매매 이전의 1차 예방: 초기 가출 예방 및 왜곡된 성인식 개선	○			여성가족부	아청법
	(9) 성매매 이전/이후의 2차 예방 강화: 초기 성매매 선별·평가 작업 강화		○		여성가족부	아청법
	(10) 성매매 이후의 3차 예방: 성매매 재유입 억제방안 강화			○	여성가족부	아청법
2.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1)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	여성가족부 교육부	성매매법 학교폭력법
	(2)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인문교육 활성화		○		여성가족부	아청법 청복법
	(3) 성매매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도 제고	○			여성가족부	-

	(4) 범죄피해자로서의 가출청소년 보호방안 마련	○			여성가족부	청복법
	(5) 사례별 조사분석과 지원		○		여성가족부	아청법
	(6) 가출청소년 이용업소와의 협력 활동 강화		○		여성가족부	-
	(7) 가출청소년쉼터의 다양화		○		여성가족부	청복법
	(8)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성매매법 아청법 청복법
	(9) 아동·청소년보호정책으로서의 정체성강화		○		여성가족부 법무부 법원	성매매법 소년법
	(10) 아동·청소년 성매매 업무 체계 일원화		○		여성가족부 법무부 법원	성매매법 소년법
	(11) 인터넷 성매매파악을 위한 전담형사사법수사팀의 구축	○			경찰청	-
	(12) 아동청소년 성매매 통계자료 구축	○			여성가족부 경찰청	-
	(13) 체계적인 사례관리	○			여성가족부	-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1)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		여성가족부 국방부	아청법
	(2)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 성구매자의 신고유인책의 마련		○		여성가족부 경찰청	아청법
	(3)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의 처벌강화	○			여성가족부 법무부	아청법
	(4) 특정사회봉사명령의 부과(인터넷 성매매 예방 글 유포 알리미봉사)		○		여성가족부 법무부	아청법
	(5)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		○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성매매법 아청법

* 단기 정책방안은 기존 정책 내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이며, 중장기 정책방안은 조정·연계·신규 추진이 요구되는 과제로, 후속연구를 통해 실현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관련법 약칭 : 가정폭력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청복법(청소년복지지원법)

.....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강지명(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연구원)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¹⁾

1. 서론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보호법으로 약칭)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으로 약칭)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으로 약칭)을 통해서 집행되는 성매매 정책의 일부분이다. 성매매 정책은, 처벌과 관련 한 부분은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이원 공조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각기 마련하여 공조하여야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에 대한 연구는 이원화된 성매매 정책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이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전제로 한다. 이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되어야하는 정책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인 바, 본고에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처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성매매 아동·청소년처우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정책에서 ‘아동·청소년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성판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이 가장 기본적인 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논점이 대두되는데 첫째는 아동·청소년의 성구매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이다. 실무상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상으로만 보면, 성인의 성을 구매한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처벌법상의 보호처분의 부과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

1) 이 글은 본원의 2013년 고유과제인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에서 저자가 집필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대회(2013년 12월 6일)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년의 성을 구매한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처벌법상 보호처분 부과에 여지가 없고 형량 또한 성보호법상의 형량에 따라야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의 전제가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인바,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두 번째 논점은 성판매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관계없이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의 심각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형사제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범행 또는 범행을 행할 우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 명칭상의 ‘보호’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도저히 중첩될 수 없는 용어이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소년원송치라는 구금까지 포함하고 있는 보안처분이다. 또한 성인 성매매피해자는 의사에 반하는 시설의 입소나 시설에서의 수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와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집행이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처우 현황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한다.

II.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법적 검토

1.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처우

성매매는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제정 이래 명시적인 범죄로 규정되어왔으나 법과 현실은 일치하지 않았다. 성매매정책은 이후 2004년에 와서야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처벌법의 시행에 의해 폐지되었고, 동법에서도 성매매는 불법으로 규정되었다.²⁾ 다만, 비자발적인 성판매의 경우는 성매매의 피해자로 간주되어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청소년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로 간주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자발적인 성판매라 할지라도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의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성보호법 제38조를 통해서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된다.

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부과될 수 있는 처우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재활 센터에 선도보호위탁 보호처분’이 있으며, 가정법원 미송치시에는 검찰단계에서의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의 이수’가 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재활 센터에의 위탁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결정을 통해서 부과된다. 소년법상의 보호관찰처분 시에는 수감명령이 병과될 수 있으며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의 위탁은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법원 소년부 판사는 상기 위탁기간의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소년법상의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부과된 수감명령은, 보호관찰소장이 그 집행을 여성가족부에 위탁할 수 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³⁾

는 과료에 처해진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감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감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감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검찰단계에서 부과되는 교육과정과 상담과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한다. 이때 검사는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의 이수명령을 받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이수를 거부하거나 이수 시 지켜야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보호처분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차별화된 보호와 지원은 법률상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보호와 재활을 위해서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 어떤 보호처분이든 여성가족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부과근거는 범행 또는 범행을 행할 우려이다. 촉법소년은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검사가 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면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우범소년은 우범사유가 존재하고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의 결정으로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보호자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의한 구금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호자 위탁, 장·단기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위탁, 의료시설에의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장·단기 송치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금이 가능하고 각종 보안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형사제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은 법무부교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잔인하고 응보적인 형벌로부터 소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의 ‘보호’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처분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부과는 형법상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형사제재

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미성년자로서의 형사책임연령이 의미하는 것은 형벌부과의 하한연령일 뿐이다. 이와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형사제재부과의 하한연령이 형사책임연령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형사책임하한연령은 10세로 보고된다.⁴⁾ 영국 구금 하한 연령은 15세⁵⁾이지만 우리나라는 10세 이상이면 소년원 송치를 통한 구금이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에는 12세부터 14세까지는 집중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사회내 처우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형사책임연령을 상향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⁶⁾ 스위스(7세), 스코틀랜드(8세) 등의 국가들도 소년사법의 보호처분을 형사제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의 하한연령이 7,8세로 보고된다. 이들 국가의 실질적인 구금가능연령이 15세 전후부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소년의 형사책임능력의 하한은 10세이다.

다시 말해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전세계적으로도 형사제재로 인정되고 있다. 입법자는 형사제재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일환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형사법 연구자들 또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형사제재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벌이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부과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비자발적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부과 가능성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둔 아이러니한 형국이 아닐 수 없다.

3. 성구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

1) 성구매 성인과의 비교

아동·청소년 성구매 성인에 대한 정책은 성인 성구매와는 처벌의 범위와 정도가 다르다.

4)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5쪽

5) Josine Junger-Tas & Scott H. Decker(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Juvenile Justice, Springer, 2006, p257

6) 가디언은 '영국웨일즈의 10세 아동들은 애완동물을 소유할 수도 없고, 섹스동의를 할 수 없고, 운전도 할 수 없지만 형사 책임은 져야한다'라고 비판하면서 영국웨일즈의 형사책임연령이 영연방을 제외한 유럽연합국중 낮은 편에 속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기사, 2012.12.05,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must be raised to protect children's rights", the guardian, <http://www.guardian.co.uk/society/2012/dec/05/age-criminal-responsibility-childrens-rights>

7) Josine Junger-Tas & Scott H. Decker(eds.), Ibid, 2006, p257

성구매자에 대한 처우는 성구매자가 성인인지 아닌지 보다는 성판매자의 연령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된다. 성구매자의 연령관계없이 성인의 성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자는 성매매처벌법상의 보호처분의 적용은 불가능하며, 성보호법상 가중된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성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성보호법에 의해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인에 대한 성매매 유인 및 권유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행위에 대한 처벌’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이 성인의 성을 구매하였을 경우 성매매처벌법상의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부과가 고려된다. 검사는 성매매처벌법상의 보호처분, 형사처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2) 성매매처벌법상 성구매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검사는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성매매처벌법상의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가정법원에 송치한다. 법원도 성매매사건의 심리결과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성매매 보호처분은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내용으로 하며 각 보호처분은 병과될 수 있다. 출입금지와 보호관찰, 상담위탁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각각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비교한다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이 없다는 측면에서 성매매 보호처분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보다 수위가 낮은 형사제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구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청소년이 성인의 성을 구매하면 하한이 성매매처벌법상의 보호처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성의 구매하면 하한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소결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과 함께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과 같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제재의 하나인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중 구금처분이 적용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 성매매 피해자에게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한 지원시설 입소나 프로그램의 이용이 강제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없다. 국친사상에 의한 국가의 강제개입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의 일환이라고 할지라도 비자발적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는 교육과정의 이수나 상담과정의 이수가 부과될 수 없다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배제와 성매매 피해보호와 지원시 의사의 반영을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였을 경우와 성인의 성을 구매하였을 경우를 구분하여 처우하는 것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III.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현황

1. 중앙부처 정책의 접근 차원과 방향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현황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의 일부분이며,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전체 성매매관련 정책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성매매정책은 ‘성매매의 예방과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법규정의 집행’이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⁸⁾

8) 변화순 외,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과제 평가·정비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예방

예방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루어진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의 운영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성매매방지 및 관련 법령의 보완 및 정비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관계부처에서 하고 관련법령의 유기적 연계 체계의 정비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에서 하고 있다.

성매매예방을 위한 두 번째 정책내용인 성매매방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는 성매매방지 홍보 및 왜곡된 성문화를 개선하는 정책과 성매매 방지정책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성매매 방지 홍보 및 왜곡된 성문화의 개선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관계부처에서 하고 있으며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의 확산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다.

성매매예방차원의 세 번째 정책내용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활성화이다. 대상별로 특화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주관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 양성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성매매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정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성매매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부분의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하는 일, 탈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일,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을 강화하는 일,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일,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올해의 성매매 피해자 보호분야 과제로 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여성보호 및 지원인프라 강화를 위한 '상담소 및 지원시설기능의 강화'는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시설 및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크 강화, 상담원 등 인적 자원 양성 및 역량강화,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등도 여성가족부가 전담하고 있다.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서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의료 법률지원과 치료회복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탈북성매매여성의 자활인큐베이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신용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강화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하는 것,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차단을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피해자 보호는 외국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유흥업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다. 이때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국내외의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원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법무부는 성매매 피해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해서 전국의 검찰청의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3) 아동·청소년성매매 관련 법규의 집행

법무부는 성매매 관련 전담검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찰청은 성매매 전담 수사인력 확충하고 법무부와 경찰청은 성매매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서 성매매관련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상시단속을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역할과 함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집결지의 성매매여성의 현장상담이나 자활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역할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성매매 알선업자 및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성매매알선 직업소개소를 단속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경찰 및 관계 공무원의 유착고리를 근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 고용업소의 점검 및 청소년 성매매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고용업소 성매매 범죄의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성매매 알선 근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성매매알선행위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고용노동부가 협력하고 있는데 비해서 청소년 고용업소의 점검 및 청소년 성매매의 단속과정은 여성가족부만 관여함으로 인해서 여성가족부만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휴대폰, 인터넷 상의 성매매 유인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유해 휴대전화 성매매불건정도의 차단을 맡고 있으며 인터넷 성매매의 알선 및 음란정보등의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이 맡고 있다.

해외성매매의 방지를 위해서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해외성매매의 실태를 조사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업체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는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해서 성구매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신·변종 성매매 단속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는 자유업종의 성매매 적발업소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성매매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국세청에서는 성매매 관련 탈세 추징을 강화하며, 보건 복지부에서는 안마시술소 등의 마사지 업소를 개방적 공간화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성매매 방지 정책사례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차단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차단의 강화를 위한 각 중앙부처의 노력이 아쉬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시된 예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의 ‘주민 힘으로 지키는 여성안전마을’ 14곳 선정하기 사업⁹⁾ 중에서 중랑구의 사례를 아동·청소년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사례로 들 수 있다. 여성안전마을은 갈수록 증가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마을 단위의 주민과 NGO, 마을 내 경찰, 구청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직접 파수꾼이 되어 여성들이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랑구의 ‘초록상상’은 다가구 주택 등 거주지역 주변에 게임방, 주점등 유흥업소가 많아 10대 가출 청소년이 늘어나는 등 여성폭력으로 안전하지 않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없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구청과 복지관, 건강가정

9) 서울시청 보도자료(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 2013년 4월 25일 조간용

지원센터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을 젠더 감수성강사로 양성하고 중랑구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성 폭력 예방캠페인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여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초록상상'의 목적이다.

강동구 '소나의 집'에서는 아동 눈높이에 맞춘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매매집결지와 유흥업소들이 유치원과 도서관 등의 아동통학로에 인접해 있어 아동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지역적 특색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여성폭력 예방인형극 등을 통해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예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민, 성문화센터,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 전문가 인력 풀을 형성하여 망 내에 발생한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연합공동체의 구축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3.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세부 정책별 현황

1)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기본체계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성매매 피해자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성매매피해지원 목적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구축해나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부터 성인성매매여성과는 다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집결지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시작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알맞지 않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지원 정책은 성인 성매매피해자지원정책의 일부로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으므로 성인성매매피해자지원정책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지원 기본체계는 <표1>과같이, 상담소나 경찰서를 통해서 긴급구조가 이루어지고 상담을 통해 의료 및 법률의 지원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시설에 입소하면 지원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지원시설을 통해서도 의료 및 법률지원이 가능하다. 시설퇴소 후에는 그룹홈에서의 거주하고 창업 및 취업을 통해서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표 1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및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및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 및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 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2013.6.10방문)

이러한 단계별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있어 지원시설은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숙식제공 등을 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시설에는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청소년은 청소년지원시설을 이용한다.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지원시설은 2012년 8월기준으로 14개소이며 기본입소기간을 1년으로 하여 19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표 2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별 현황¹⁰⁾

(2012년 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계/구분	지원시설			그룹홈	자활지원 센터	상담소	대안교육 위탁기관
	일반	청소년	외국인				
88개소	25	14	1	11	9	26	2

10) 여성가족부,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332

일반지원시설은 대다수의 시도에 있지만 청소년지원시설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경남에 총 14개소가 있다.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에 거주하는 성매매청소년에게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의 실질적인 의미는 청소년지원시설은 성매매청소년으로 하여금 본인의 거주 지역을 떠나서 시설입소를 해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타지역으로의 입소를 해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해보아야할 것이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연고지를 떠난 시설의 입소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표 3 성매매 청소년 피해자지원시설의 지역별 현황

(2013.1.1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계	11	5	4	1	2	2	1	4	1	-	1	1	-	1	3	1	39
일반	6	3	2	1	1	1	1	4	1	-	1	1	1	1	1	1	25
청소년	5	2	2	-	1	1	-	-	-	-	-	-	1	-	2	-	14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2013.6.10방문\)](http://www.mogef.go.kr/(2013.6.10방문))

하지만 2010년부터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2010년 이용인원은 47명, 2011년 이용인원은 81명이다.

표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입소·이용현황

(단위 : 명)

시설별 연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일반·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외국인)	청소년 대안교육 위탁기관	그룹홈	자활지원 센터	성매매피해 상담소	비고
2004~ 2005	1,729	-	-	-	359	16,336	
2006	1,967	-	-	27	148	7,685	
2007	1,873	-	-	52	288	7,252	
2008	1,770	-	-	65	304	8,124	
2009	1,772	27	-	73	560	9,892	
2010	1,811	55	47	80	564	7,360	
2011	1,613	39	81	84	561	6,846	

* 시설 입소·이용인원 = 전년말 보호인원 + 연중 입소·이용인원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2)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위탁교육처리절차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치료재활 교육 및 사이버 또래상담은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성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치료재활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처리절차는 ‘경찰-검찰-여성가족부-위탁교육기관’ 순으로 이어진다. 성매매대상청소년이 발견되면 경찰에서 성매매대상청소년을 수사하여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사는 교육상담이수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있다. 교육상담이수명령을 내리는 경우 여성가족부에 교육과정 이수결정을 통보하여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40시간) 성실하게 이수하였는지 불성실하게 이수하였는지에 관한 교육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며 성실하게 이수한 경우 교육수료후 6개월간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교육을 지원하고 진로 및 진학을 지도하고 시설입소를 연계해 줄 수 있다. 또한 의료 및 법률적 지원을 위한 기관 연계도 가능하다.

표 5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실적

(2012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육실시	94	197	205	255	372	355	364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청소년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대상 성매매의 최초경로가 인터넷 채팅이라는 경찰청 통계자료를 감안하면 정보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터넷 성매매는 용이해졌고 이로인해 청소년대상 성매매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최초경로는 인터넷 채팅의 경우가 78.4%에 달한다.

표 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최초경로(2010년)

(출처 : 경찰청)

구분	계	인터넷채팅	유흥단란	티켓다방	스포츠 마사지	기타
인원수(명)	518	414	14	4	4	92
백분율(%)	100	78.4	2.6	0.8	0.8	17.4

위탁교육은 청소년성장캠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교육기관이 선정되어 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부산, 광주, 전북, 대구에서 위탁교육이 가능하며 지적장애 청소년의 경우 서울의 ‘평화의 샘’ 한 곳에서만 지원가능한 실정이다. 장애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의 발굴 및 지원대책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7 성매매 피해청소년성장캠프(교육) 위탁기관

지 역	사업수행주체(대표자)
중 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 울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인 천	인천성산사랑의집
경 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강 원	춘천길잡이의집
대 전	대전광역시여자청소년쉼터
부 산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광 주	광주YWCA
전 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 구	대구여성회
서 울	평화의샘(지적장애청소년)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t.go.kr/\(2013.6.10방문\)](http://www.moget.go.kr/(2013.6.10방문))

3) 청소년 성매매 예방과 성매매 피해자 조기발견 정책

청소년 성매매 예방과 성매매 피해자 조기발견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가출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출 등으로 인해 성매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2013년 정책 추진방향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교육의 대상을 청소년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대안학교 등 관련시설에서 추천한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사이버포래상담 등을 통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의 긴급구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 가출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청소년 성매매 예방과 성매매 피해자 조기발견 정책 은 특히 가출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에 비중을 두고 정책이 전개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입장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일시보호하여 생계로 인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다. 가출청소년을 일시보호하고 상담하여 교육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으로 복귀하게 하거나 사회로의 적응 지원이 목적이다. 쉼터증설 및 아웃리치 강화로 청소년쉼터의 운영실적은 이용인원이 4년전에 비해 63.1%증가하였다.

표 8 청소년쉼터 운영 실적

(2012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수, 백만원,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쉼터 수	72	76	81	83	83	92
예산(국비)	4,165	4,639	4,651	5,874	6,262	7,287
쉼터 수	72	76	81	83	83	92
이용 청소년 수 (연인원)	234,271	235,209	245,653	267,117	400,533	405,204
일시	234,271	235,209	245,653	267,117	109,616	106,109
단기 · 중단기	(8,733)	(9,019)	(9,673)	(9,350)	290,917 (11,657)	299,095 (11,764)

* 괄호 안은 연간 입소 실인원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쉼터의 유형과 기능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시쉼터의 경우 전국에 13개소로 가출예방과 조기발견, 초기개입을 목적으로 한다. 24시간에서 일주일 이내의 일시보호가 이루어지고 가출하거나 거리를 일시적으로 배회하는 청소년을 이용대상으로 한다. 차량과 같은 이동형과 청소년유동지역의 경우에는 고정형이 있다. 일시 보호 및 거리상담을 통해서 위기개입상담을 할 수 있다. 진로지도와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며 가출청소년이 구조되거나 발견되면 청소년쉼터와 연결해준다. 기본적인 먹거리, 음료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표 9 유형 및 기능별 청소년쉼터 현황

(2013년 4월 기준)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개소 수	13	49	30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 지원
이용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내외 단기보호	2년 내외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가출·거리 배회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 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핵심기능	일시 보호 및 거리 아웃리치(상담)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기능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가출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 활동 전개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및 자립지원 등 특화 서비스 제공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단기쉼터의 경우 49개소가 있으며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으로의 복귀 및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한다.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를 통해서 가출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의식주와 의료 등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해 가출청소년을 분류하여 타기관과의 연계의뢰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중장기 쉼터의 경우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및 자립지원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전국에 30곳이 있으며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2년 내외의 중장기 보호가 이루어지며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다. 위치도 단기쉼터가 접근의 용이성을 위해서 주요도심별로 자리잡고 있다면, 중장기 쉼터는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다.

(2)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정책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Community Youth Safety-Net)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과 연계협력을 비롯하여 상담 및 활동지원한다. 청소년전화인 1388을 운영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를 하고 있다. 교육지원과 자립지원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표 10 지역별 운영 현황

(2013년 4월 기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시·도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시·군·구	65개소	81개소	150개소	170개소	174개소	180개소

* 2013년 기준 16개 시·도 및 180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2013년 4월 전국 시군구 180개소를 중심으로 CYS-net은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 및 정서적 지원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생활을 비롯한 경제적지원,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의 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표 11 서비스별 제공 내용

(' 12.12월말 기준, 단위 : 건)

구분	상담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	합계
2009	504,540	43,517	109,428	18,210	3,387	5,431	1,283	29,793	715,589
2010	882,001	62,456	225,721	84,535	11,544	6,254	1,728	129,255	1,403,494
2011	1,102,858	64,147	237,072	146,621	18,565	8,513	4,981	191,135	1,773,892
2012	1,094,027	67,300	228,533	172,502	15,486	6,872	1,409	189,707	1,775,836

* 자료 출처 : CYS-Net 종합정보망

(3)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동반자(관련 전문가)가 위기 청소년을 대면하여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한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동반자는 1:1의 개입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 판정 후에 이루어진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은 정서적 지원,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동반자 근무형태로는 전일제(주40시간 월 184만원), 분기당 12사례 관리시간제(주12시간 시급 13,700원), 분기당 6사례 관리의 형태가 있다. 청소년동반자의 경우에도 상담 및 정서지원이 가장 많은 사례유형이며 기초생활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 사회적 보호, 여가 및 문화활동의 순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표 12 **청소년동반자 지원 사례 유형**

(2012년 6월말 기준, 단위 : 건)

구분	계	상담 및 정서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	의료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여가 및 문화활동
2009	486,963	400,566	19,221	44,070	6,675	988	2,687	796	11,960
2010	537,516	446,226	20,877	49,686	6,517	996	2,061	497	10,656
2011	584,464	492,903	18,593	51,688	8,201	1,097	2,109	767	9,106
2012	649,455	562,019	18,638	50,413	6,147	513	1,571	391	9,763

* 출처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종합정보망

4)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계 강화정책

여성가족부에서는 유해 환경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와 유해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는 최근 신·변종 유해업소 증가 등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 이동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가출청소년을 구호하기도 한다.

1999년 12월부터 대통령 지시를 근거로 유해업소와 사범단속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중앙점검단은 청소년성보호(성매매, 강요행위등)등의 5건의 단속 실적을 가지고 있다. (2012년 12월 31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음란·유해정보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 감시체계가 존재한다. 토렌트, P2P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배포 등과

같이 청소년유해정보가 대량 유통될 때 체계적·시의적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과 같은 신종매체를 통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심의기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구축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감시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5)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보호처분 정책

경찰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의 보호사건의 수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고 한다.¹¹⁾ 일반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보호사건과는 따로 성매매보호사건의 통계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정책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매수 유인행위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동행위는 형사처벌하게 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성매매의 미수까지 형사처벌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성인대상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 안전 드림센터(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24시간 온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청 안전 드림센터는 각 지방 경찰청과 연결되어있어서 해당경찰관서에서 즉각적인 수사개시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특히 포상금을 통해서 일반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매수유인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11) 법무부 답변

강화하였다. 그러나 인터넷대표 신고사이트를 관장하고 있는 경찰관서에서도 청소년 성매수 유인관련 자료는 따로 통계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유인에 대한 정책수립과 현실이 유리되어 있음을 뜻한다.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법제도는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끊임없는 보완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IV.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정책의 실효적 개선방안

1. 아동·청소년보호정책으로서의 정체성강화

집성촌의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시설입소와 직업교육’이라는 성매매피해자지원 및 보호정책의 기본틀은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대안교육 위탁 운영의 수요의 증가는 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개별 분석·지원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에 대한 정책이 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 특화되어 사례별로 수립되지 않은 이유를 청소년의 성매매피해자의 수가 성인에 비해서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존재해야하고 운영되어야할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 수가 실질적인 성매매의 수를 가늠할 수 있는지,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아동·청소년보호정책에 입각한 대표적 대응책인 대상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하는 제도는 별도의 통계조차 잡히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였을 때 ‘성매매’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보호처우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업무 체계 일원화

아동·청소년성매매 업무는 타위기관이 필요하다. 성매매를 한 대상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구매한 아동·청소년 모두 다양한 부처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 정책부서가 전담할 수는 없다. 대상아동·청소년이라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며 아동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대상아동·청소년이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서 아동·청소년성매매관련 업무는 성매매예방 및 대책의 주제 범주에서 다루기 보다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적 자원을 관장하는 타위기관에서 개입의 정도와 단계를 조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3. 사례별 조사분석과 지원의 필요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교육현황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형사사법기관 인지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비율이 늘어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형사사법이 인지하는 성매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문제의 파악이다. 현 아동·청소년 성매매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파악에 더욱더 경주해야 한다. 하지만 2010년 청소년대상 성매매 최초경로가 인터넷 채팅의 경우가 78.4%에 달했다는 데이터는 성매수자와 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의 실태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기기의 보급,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아동·청소년의 금전욕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일회성 책상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매매피해청소년의 성매매원인, 동기 등에 대한 실질적 분석을 데이터화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해마다 존재하는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원인을 사례별로 다각 조사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각의 성매매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케이스워크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체로 캠프를 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개개아동·청소년에 대한 원인의 진단과

처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특히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실태 파악을 통해서 꾸준히 관찰해서 성매매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현재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주된 대응책인 위탁교육은 청소년성장 캠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청소년의 경우 서울의 평화의 샘 한 곳에서만 지원 가능한 실정이다. 성매매피해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위탁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4. 인터넷 성매매파악을 위한 전담형사사법수사팀의 구축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의 비율을 감안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의 첫단추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사법기관의 인지가 불가능에 가까운 암수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합정수사 등의 형사정책적 범죄예방요소도입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파악된 성매매아동·청소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몫이지만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몫일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성매매를 파악하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2012년에 여가부 중앙점검단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의 업무해태가 아니라 일선 형사사법기관으로 그 역할이 이양되고 일선의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업무는 경찰의 주된 업무내용이 아니며 특히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될 수 없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이버수사대를 보유한 우리 경찰조직에 인터넷 성매매파악을 전문적으로 하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전담하는 사이버수사팀을 구축하여 상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한 건이라도 발생된다면 아동·청소년성매매전담 사이버수사팀은 존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5. 아동청소년 성매매 통계자료 구축

‘청소년성매수유인’과 같이 최근에 설립된 법령에 의한 정책은 우선 순위로 통계데이터의 정리 및 구축을 통해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성매매대상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사건처리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기타의 범죄와는 통계분류가 되어야한다. 현재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 미성년자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미성년자만 통계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통해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소년의 인원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단계별 기관별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 또는 성구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계자료가 구축되어야할 것이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대안교육위탁생의 수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을 따름이다.

6. 성매매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방안

대표적인 성구매자인 남성에 대한 집합교육이 가장 효율적인 기관은 국방부이다. 국방부의 성매매예방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군기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성매매·성폭력예방 교육이수를 각각 년1회이상 하고 있다. 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를 2013년말까지 개발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동시교육이 가능하도록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어¹²⁾ 일회적이고 요식적인 교육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매 휴가, 외출 및 전역 시 성매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교육 또는 내용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매 휴가 및 외출, 전역시 관련내용이 든 유인물을 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성매수유인은 처벌대상이라는 점이 들어있지 않은 성범죄 및 성매매예방교육자료도 다수 존재한다. 20대의 사병은 대상청소년과 함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수 있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의식주이 제공도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 등, 실제 사례에서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내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12) 국방부 정보공개청구(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접수번호 2166698)

V. 결론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응하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원공조 정책 운영시스템을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에서는 아동·청소년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성판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이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적인 틀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구매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인의 성을 구매한 아동·청소년과 양형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형사제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부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범행 또는 범행을 행할 우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명칭상의 ‘보호’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도저히 중첩될 수 없는 용어이다. 일부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차원에서 보호처분 항목별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소년원 송치처분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을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현황을 통해서 살펴보면 개선방안으로 몇가지를 제안하였다. 김성춘의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시설입소와 직업교육’이라는 성매매피해자지원 및 보호정책의 기본틀은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는 아동·청소년보호정책으로서의 정체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업무 체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원화된 업무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 이는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케이스워크적인 접근 가능하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요구가 실제 보호와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괄적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 시설입소 등과 같이 ‘시설입소와 직업교육’이라는 성인 성판매자에 대한 정책틀을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인터넷 성매매는 형사사법기관의 인지가 불가능에 가까운 암수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미수도 처벌하고 있는 만큼 형사정책적 범죄예방요소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2년에 여가부 중앙점검단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¹³⁾는 것은 부처의 업무해태가 아니라 일선 형사사법기관으로 그 역할이 이양되고

13) 중앙점검단 관계자와의 전화인터뷰결과임

일선의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비역까지 포함하여 군인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내용’이 강조된 예방 교육의 강화를 제안한다.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식주이 제공도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 등, 실제 사례에서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내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워크숍자료집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

인 쇄 2013년 12월 12일

발 행 2013년 12월 13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